

議員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중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라 한다)가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중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형공장 설립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6.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5時 33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文化教育委員會 梁東錡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東錡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文化教育委員會 所屬 梁東錡議員입니다.

저희 文化教育委員會에서 서울特別市教育監所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公有財産中 重要財産의 범위에 관한 規定을 削除하고 둘째,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事項을 擴大하고 셋째, 下級教育廳에서도 教育長에 대한 諮問機構로서 公有財産審議會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委員會에서 審査한바, 地方財政法 第78條 및 同法施行令 第84條와 地方教育自治에 關한法律 第36條에 따라 下級 教育廳에서도 教育長의 諮問機構로서 公有財産審議會를 두고, 公有財産中 重要財産의 範圍에 관한 事項을 削除하여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事項을 擴大하고자 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滿場一致로 本 委員會에서는 可